

名士칼럼

경찰공무원의 특수성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부단히 노력해야 -

최근,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에 이어 경찰공무원법 재개정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경찰관 기강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은 “경찰관이 집단행동을 한다”든가 자기가 쓰던 “경찰정모를 청와대로 보냈다”든가 “음주운전을 격하처리 했다”든가 “거물 브로커에 연루되었다”든가 하는 등이나 그 취지는, 경찰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비난과 밥그릇만 쟁긴다는 불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이 낮았던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무여건이 열악했던 경찰공무원들은 자기 신상에 관한 승진·보직 등 인사문제나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필요한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그것은 누구나 몸တွေ고, 자랑스럽게 더 잘 살고 싶은 인간다운 평범한 욕망에서 초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임무는「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범죄를 예방·수사」등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이 그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그 구성원인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존립 자체까지도 위협받게 된다.

더구나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범 죄는 장소를 초월해서 첨단·지능화하고 잔인·포악해져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가족의 안전에 대한 위협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범인을 검거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경찰의 업무활동이 반드시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고 범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는 그 국가에서 안위에 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일 위험하고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처우는 다른 공무원 보다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경찰공무원을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세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 첫째, 신체가 건전해야 한다.

신체 건전의 의미는 문자의 표현대로라면 통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범인을 검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체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외형적으로도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체격도 필요한 것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에는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신장, 체중, 흉위, 시력 등 체격과 체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권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의 체격조건을 폐지하고 또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경찰을 단순히 일반공무원으로만 보고 경찰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단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거운 돌은 힘이 센 사람이 옮기기 쉽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
여기에서 사상이란 어떤 정치적 이념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투철한 국가관, 그리고 사명감과 성실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은 그 결격사유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다. 국적을 가지지 않아도 애국심이나 충성심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그 나라의 국적은 가져야 할 것이다.

시간을 다루는 급박한 위기사항에 대하여 멸사봉공하겠다는 사명감 몇 년, 몇 달이 걸려서라도 범죄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끈질기고 오기찬 집념과 성실한 노력

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 세째로,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

성품이 곧고 행실이 똑바르다는 뜻이다. 그것은 단순히 법만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된 것이다. 투기나 향락 등은 「법대로」부동산을 매입하고 오락을 즐겼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도덕성을 갖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단한다는 것은 공정성에서 설

득력이 없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공무원법은 그 결격사유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파면, 해임처분”의 사실만 있으면 결격사유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의 중형 선고를 있거나 형의 집행 종료 후 또는 징계파면 등의 처분 후 3~5년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경찰관보다 낮은 단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선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심할 때 국민으로부터 더 뜨거운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범죄 특히 첨단기술에 따른 범죄수법 등은 국민의 신고나 제보가 없이는 발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예방도 주민 또는 민간경비업체 등의 협력이 없이는 그 활동영역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경찰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주민의 협력·협조는 경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경찰공무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것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검증 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는 범정사유가 아니면 자기 의사에 반해 퇴직되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호를수록 무사안일에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둔해지기 쉬운 것이다. 이상 세가지 자격요건은 동시에 국민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부단히 요구하는 신뢰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어느 하나에도 흠결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으로 갈라져 때로는 도중에 탈락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선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심할 때 국민으로부터 더 뜨거운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시론



장 암
(평안남도 지사)

대한민국수립 이래 경찰은 건국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공공 안녕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담당하여 살신성인,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강인한 조직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은 우리사회에서 잠시도 없어서는 안될 특수조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의 막중한 임무를 양어깨에 메고 오로지 충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으로 民生治安에 警察力 集中할 수 있게 해야

지금 우리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법의 존엄성 상실은 물론, 특히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윤리, 도덕마저 상실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극렬한 시위문화 속에서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 충성한 경찰이 오히려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농민단체의 불법시위 진압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농민 2명이 쓰러져 사망했고, 진압에 나섰던 전경 수십명이 부상을 당해 입원 가료 중에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농민의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하였다는 국가인권 위원회의 결론

이 내려짐에 따라 시위진압지휘 경찰간부와 경찰총수가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지켜보다 못해 피해전경 부모들이 거리에 나서 농민사망을 경찰에만 돌리는 부당성과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까지 열렸다.

일반국민들은 연이어 일어나는 폭력시위와 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전반에 걸쳐 시위문화의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병력이 매일같이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있음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범죄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국민

이 불안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히 올바른 시위문화를 위한 강력한 법적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조직이라는 전통을 계승하여 한치의 빈틈없이 일상불란한 조직체로 경찰본연의 의무를 완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특히, 정부는 경찰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기를 진언 드린다.

“權警 責警”의 날을 고대하며

— 손기태 (경기 일산경우회)



L형은 서울농대를 졸업,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위직으로 명퇴하여 70의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최고령 건강한 친구다.

최근 일삼는 한 전철역광장 포장마차에 앉아 순대를 안주로 소주 한잔 나누며 들려주는 애가다. 지난 8월 하순경 일요일 오후 3시경이다.

L형은 고양경찰서 옆 00빌딩 내 모 사무실에서 누구와 만날 약속으로 손수운전, 약속장소로 급히 가던 중이었다. 4거리에서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 차량의 시내버스가 좌회전 출발하기에 그제 앞 차량의 버스에 바짝 붙어 뒤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아차! 때마침 교통 정리하던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고 말았다.

요즘 경찰관은 많이 달라졌다. 애 댄 홍조의 젊은 교통경

찰인데 고운 얼굴에 마냥 상냥한 미소를 띠며 신호위반 사유를 찬찬히 그리고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서 앞차를 따라 좌회전조차 할 경우, 앞차량으로 인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차와의 간격을 다소 확보하면서 천천히 좌회전해야 하는데 앞 차량의 버스로 인해 전방의 시야가 막혀버린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못 보고 그냥 좌회전했다는 것이다.

들고 보니 자승자박한 결과로 풀이 죽어 뒤통수만 극적 극적 굽고 있을 수밖에... 그런데 이 교통경찰, 빙그레 웃으면서 “연세 많으신 분이 직접 운전하셨고 처음이신지라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운전하시라”는 극진한 노인공경의 자세에서 친절한 경고만을 받고 후-유! 하고 그 자리를 무사히 빠져 나와 안도했다는 것이다.

교통경찰의 고마움도 있고 해서 검사검사 이 소주 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거꾸 마신 몇 잔에 약간의 취흥이 도도해 지면서 지금, 기분 좋게 호언장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경찰은 과거와 달리 많은 개혁을 거쳐 장족의 발전을

거둬하고 있다. 자체에 우리 120여만 명의 전·현직 경찰들은 경찰 창설 60여년 만에 처음 수사권 조정(노예조항에서 상호협력하는 관계)의 호기로 흥분과 기대에 들뜨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조정 추이(推移)를 보면, 형소법 제195조 및 동법 제196조를 개정해 경찰도 수사주체에 포함시키기로 하되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범죄”(내란, 외환, 살인, 마약, 조직폭력범 비롯한 반사회적 범죄, 법정형 10년 이상의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과 특히, “중요범죄”에 명시(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들어감·경간 수사총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검찰의견을 (우선으로) 존중하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인(吾人)의 생각은 이렇다.

내란, 외환등 등 첨예(尖銳)하고 예민한, 중요한 정치 및 경제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은 계속 검찰이 담당하기로 한다고 하자.

그러나 위의 “중요범죄”가 아닌 “비(非)중요범죄”라 하더라도

도 검찰의견을 존중하기로 하는 방안(예외 및 단서조항을 두어 검찰일련도의 수사권 유지)의 검토는 필히 거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 검찰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옛 노예조항인 악령의 향수가 어찌 생각나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같은 자기 식구들인 감사 및 검찰직원이 잘못했을 때 과연 경찰에게 제재로의 수사지휘를 하명할 수 있을까?) 이를 발미하여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인습(因襲)으로 되돌아가 다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서 조자통 현 칼 쓰는 듯 한 양상(樣相)이 어찌 복고(復古)되지 않겠는가?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다면해서도 경찰과 충돌이 있는 경우 “비중요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따돌린 후 검찰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상 국민의 권리와 편의위주라는 경찰의 대국민 “서비스”를 점차 무산시키는 암적 존재로 변형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지을 수 없다. 이는 결코 노파심(老婆心)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어정쩡한 예외 및 단서조항을 두어 60여년의 숙원이 원점으로 회귀(回歸)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경우신문」 원고 모집

◎ 時論, 提言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중 그때그때 사회문제화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여 국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

◎ 독자의 소리

-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낀 일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

◎ “이래도 됩니까”

- 전·현직 누구나 ‘체험한 ‘일’ 중에서 사회 고발성’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특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

◎ 취미나 건강

- 노후인생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건강비법이나 취미생활

◎ 行事, 動靜, 結婚, 訃告 等

- 市道會, 地域會 행사 또는 동기생 모임이나 경찰재직중 갖게된 각종 모임 소식

- 회원의 출신계급과 관내·외 거주를 ‘불문하고’ 소식과 動靜을 사진과 함께 송부

- 결혼, 부음 등은 일시 장소와 회원과의 관계를 명시

- 경우회의 발전방향이나 경찰과 관련이 있는 내용

※ 200자 '원고지' “6매(A4용지 2매)” 內外로 작성하여 경우신문 담당자 앞으로 송고

「警友會」를 사칭한 태극기 판매자 신고 바랍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 경우회를 사칭, 태극기 등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전국경찰에 단속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 경우회에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경우회 각 시도회 및 지역회의 사업은 중앙회장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물품의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는 것은 본회 판매사업 등은 일체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경우회」 명의를 도용하여 국기, 족자, 책자 등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는 것은 본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